

## □ 자체점검 요약표

1.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2. 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제외대상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 - 소화기구만 설치된 대상	1.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단, 아파트는 11층 이상) 2. 건물내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가 있는 연면적 2,000㎡ 이상
3. 시기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실시	
4. 점검방법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등) ※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대상 제외	
5. 점검자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자
6. 제출	점검후 30일 이내 제출(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제출)	
7. 제출서류	※ 관계인이 자체점검 한 경우 1. 관계인 증빙서류 2.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3. 지적내역 정비내역서	

※ 관계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요약하였으며 관리업자가 점검할 경우 제출서류는 차이가 있으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 질문1

건물이 여러 개의 동으로 사용승인일이 다른 경우?

◇ 각 동 중 가장 빠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점검을 동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소방안전관리 대상 건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각 분리·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질문2

여러 개의 동 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건물을 포함하는 경우?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경우와 자진소방시설인 경우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관서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질문3

작동기능점검을 2014년 12월에 실시한 경우 그 대상의 사용승인일이 1월이라면 예외 없이 2015년 1월에 실시해야 하는지?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질문의 경우 1월)의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 다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 기존 방식대로 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질문4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팩스 또는 메일로 받을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여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질문5

2015년 종합정밀점검 확대대상 중 하반기에 사용승인일이 속해 있을 경우 상반기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제출해야 하는지?

◇ 기간의 역산에 따라 상반기 실시함이 바람직하나(권장지도) 시행 첫 해인 2015년은 점검시기 관계없이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6**

기존 종합정밀점검 대상물도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소방서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1]제2호 마목 2)에 대한 예외는‘작동점검시기’를 정한 사항으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는 사항이 아니며 제2호 마목 1)의 중복을 피하고자 명시한 것입니다.

**질문7**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작동기능 점검 실시 후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인 경우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8**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는지?

◇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6개월이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합니다.

**질문9**

사용승인일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

◇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건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써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10**

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 관계인이란 소유자와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를 말합니다.

**질문11**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출서류는?

◇ ①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②관계인 증빙서류, ③정비내역서(불량사항에 대해 정비 완료하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질문12**

제출서류 중 관계인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점검자격은 법으로 정해져있으므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점검을 하셨다면 각각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소방서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으로 건축물대장 외에 거의 모든 정보의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본을 받는 것입니다.

- 관계인이 소유자일 경우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등 원본대조필한 사본
- 관계인이 점유자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원본대조필한 사본
- 관계인이 관리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 안전관리자 수첩 등 원본대조필한 사본

**질문13**

지적내역 정비내역서란 무엇인지?

◇ 자체점검 결과 지적내역을 제출하면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곧바로(10일 이내) 일정기간을 두고 보완하도록 명하게 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제출 전 지적내역을 정비하여 제출한다면 이런 절차를 간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14**

아파트의 종합정밀점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면?

- ◇ 1. 아파트의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11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동은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면 됩니다.
- 3.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별개의 동으로 있는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면 됩니다.
- 4.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 아파트로 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같은 건축물) 있는 경우 종합정밀점검 대상입니다. 이때 방화문, 셔터 등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남소방서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